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先 시정명령 後 형벌로의 전환〉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58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先시정명령 後형벌로의 전환(안 제25조2 신설, 안 제36조)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5.

3. 회 부 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IV. 검토의견

1. 先시정명령 後형벌로의 전환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 현행법은 제2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5조에서 품질인증과 관한 6가지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제36조에서는 제2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25조에 따른 부정행위 중 ‘(제3호)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와 ‘(제6호)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제6호)를 한 자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2 신설, 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

현행	개정안
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 ☐ 농림축산식품부는 先행정제재 後형벌 부과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제28조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 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등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가 술의 품질 향상 및 고품질 전통주 생산 장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주 생산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형벌적용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형벌규정		구성요건	현행형벌	개정안
제36조 제1항	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
	제2호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
	제3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내용과 달리 표시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先시정명령 後형벌전환
	제4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받지 않은 술과 혼합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
	제5호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	징역(1년) 또는 벌금(1천만원)	
	제6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내용과 달리 광고	징역(1년) 또는 벌금(1천만원)	先시정명령 後형벌전환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음.

【先 시정명령 後 형벌부과 입법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 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 다만, 현행법 제28조¹⁾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 변경·사용 변경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해당 표시 변경·사용정지 처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제28조 역시 개념상 품질인증에 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시정명정 규정을 현행법 제28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 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